



조합업무 안내

1. 사후관리 업무 강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예방하고 조합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하여 선급금 편취, 재산은닉등으로 조합 채권을 침해한 악덕채무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조치 시행(2011.1.1이후)

가. 채권회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채권회수활동 전개

- 전·현주소지등 조사가능한 모든 지역 철저 조사
- 적극적인 탐문조사 실시로 대표자 활동 상황 파악, 은닉재산 발견
- 은닉재산 발견을 위해 명의신탁, 사해행위, 부인권, 기타 권리관계분석 철저 및 재산관계 명시, 재산조회 제도 적극 활용

나. 고의적 재산은닉 등 악덕채무자에 대한 고소(고발)

2. 보증금 청구 절차

01 보증사고 발생 > 02 보증금 청구 > 03 심사 > 04 보증금 지급

가. 계약 보증금

- 부도 또는 기타 주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공사이행이 불가능할 때 즉시 조합에 통보
-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실 금액을 확정하여 문서로 청구
- 관련 증빙 자료 구비
- 조합 직원의 현장 조사 및 내용 심사
- 청구 사유의 타당성 및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지급

나. 하자 보증금

- 하자 발견 즉시 조합과 주채무자에 사실 통보
- 주채무자 및 조합의 하자 보수 조치
- 조합 직원의 현장 조사
- 조합과 사전 협의하였을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할 경우 자체 보수 후 실보수 비용 청구
- 청구 사유의 타당성 및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지급

다. 선금금 보증금

- 계약 보증금의 경우에 준함 (단 선금금 지급 및 정산 내용 적정성 확인)

라. 주의 사항

-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담당자와 협의
- 보증 사고 발생 사실 및 손실 입증 자료 준비
- 신의성실에 입각한 관리로 확대 손해 방지
- 기타 약관 내용에 따른 처리

마. 구비 서류

- 보증서
- 계약서
- 보증 사고 증빙자료(현장 사진, 공사 포기서, 하자발생 사실 확인서 등)
- 기성 내역서 및 세금 계산서, 입금표
- 기타 개별 건에 따라 필요 자료는 담당자에 문의 



조합업무 Q&A

조합업무 Q&A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조합업무 전반에 관한 궁금 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홈페이지(www.seolbi.com) Q&A 게시판과 이메일(webmaster@seolbi.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채권자가 부도 발생되어 계약보증서를 회수 하러 보증채권자의 사무실에도 가 보았지만 문도 닫혀있고 담당자도 연락도 두절되어 계약보증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채권자의 부도, 파산, 부존재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사실상 공사를 준공 하고도 보증채권자로부터 준공사실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보증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곤란하였지만 지난 1999.7.1부터는 다음과 같은 법적이행절차를 거쳐 계약보증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늘어나 효율적인 이용을 할 수 있으니 숙지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1. 당해조합원의 조치사항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을 최고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통지서를 발송한 후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보증해제 요청

- 보증채권자에 보낸 계약해지 또는 해제통지문 (내용증명)사본
-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반송된 우편물 원본
- 은행당좌거래정지통지서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부도관련 확인서

2. 조합의 조치사항

조합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위 제출서류를

근거로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당해보증을 해제하게 됩니다.

<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 준공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 당해조합원의 조치사항

발주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승계시공연대보증인의 준공확인원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계행정기관의 준공검사확인원과 보증채권자 부도관련확인서(은행당 좌거래정지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보증해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조합의 조치사항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대상공사의 계약이행완료로 인하여 보증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보증채권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보증을 해제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시 기본출자좌수 및 예치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별표2(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시 기본출자좌수 및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예치(출자)좌수가 결정됩니다.

C등급	54좌 (좌당930,120원)
CC등급	48좌 (좌당930,120원)
CCC등급 이상	44좌 (좌당930,120원)

*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공제조합 본부나 각 지점(영업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가입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조합가입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정정발급이 가능한가요?

기발급된 보증서의 계약일 및 준공일 등 보증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발급받은 보증서와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지참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즉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액등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증서의 정정이 아닌 기발급보증서의 취소 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시공도중 중단된 공사의 재개로 보증기간이 연장된 경우 중단된 기간의 계약보증수수료는 면제 가능한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당해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채권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증액)없이 공사 중단 기간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추가보증을 할 때에는 공사기간연장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단일수와 공사기간연장일수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산출하여 환불 또는 추징합니다. 🇰🇷

계약보증에 관한 판례 사례①

관리부 안동유 법무팀장

우리조합은 지난 2010년 12월, 건설도급계약관계시 빈번히 벌어지는 계약보증 및 하자보증 등의 법적 분쟁에 관한 중요 판례를 엮어 『판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조합원사의 보증업무에 참고가 되도록 이번호부터 판례사례를 연재합니다.



계약 관계없이 행한 계약보증은 원칙적 무효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5673 판결【채권압류처분및교부청구처분취소】

1. 당사자등

【원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8. 선고 91구15968 판결

2. 판결요지

【판결요지】

가.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계약보증"이라 함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이 행하는 계약보증은 당연히 보증채권자(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계약관계 없이 행한 계약보증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나. 직할시장이 지하도 개설 및 점포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이라는 사법상 계약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라는 공법상 행위의 방식을 취한 이상, 직할시장은 도로공사의 허가관청에 불과할 뿐 그 공사의 발주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에 있어서 양자의 방식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직할시와 허가업체로부터 그 공사를 수급받은 자 사이에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으로서의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건설공제조합법이 제1조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하도급이행보증·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으로 제한하면서, 제2조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위 각 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은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건설공제조합법 제1조, 제2조, 제8조

3. 판결 내용

【판시사항】

- 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계약보증의 효력
- 나. 직할시장이 지하도 개설 및 점포 조성이라는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 시행허가 방식을 취한 경우 공사도급계약관계의 존부
- 다. 건설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 범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1991.10.17.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 뒤에는 ◇◇기업이라고 약칭한다)가 1988.2.3. 도로관리청인 피고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천 동구 송림동 39 소재 송림동 로타리의 지하도 및 점포조성공사에 관한 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허가조건으로 공사비를 전액 부담함과 아울러 공사완성 후 그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고, 또 사업시행 전에 원상회복의무 등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으로서 총공사비의 70%에 해당하는 금 1,400,000,000원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시행령(1989.12.29. 대통령령 제12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에 규정된 보증서나 증권 등으로 예치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

신, 피고로부터 위 공사로 조성된 점포를 15년간 무상사용 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기업은 위와 같은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었고 또 원고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원고로부터 인허가보증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처지도 못되어 위 허가조건상의 예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조합원인 소외 주식회사 △△공업공사(이 뒤에는 △△공업이라고 약칭한다)에게 위 공사를 도급 줌에 있어서 △△공업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인천직할시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보증서를 발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공업은 인천직할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수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신청하면서 공사도급금액을 합계 금 7,00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채권자를 인천직할시로 하는 계약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수급인이 △△공업이고 보증금액의 합계가 금 1,400,000,000원인 2통의 계약보증서를 발행받은 다음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공업의 자금사정 때문에 전체공정의 31.4% 정도만이 마쳐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자 ◇◇기업에게 그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여 오다가 ◇◇기업의 허가조건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계약보증 책임을 물어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제2항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교부청구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함 다음, 원고의 위 계약보증은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고, 이와 같은 계약보증은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만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계약보증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 △△공업은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업에 대한 위 계약보증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교부청구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계약보증"이라 함은 건설공제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행하는 계약보증은 당연히 보증채권자(발주자)와 조합원 사이의 공사도급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계약관계가 없이 행한 계약보증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공사는 ◇◇기업이 도로관리청인 피고로부터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위 공사의 시행자임과 동시에 △△공업에 대한 관계에서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피고는 ◇◇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위 공사의 시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허가관청에 불과하므로, 피고와 △△공업 사이에는 원도급인과 원수급인으로서의 직접적인 공사도급계약관계는 물론 ◇◇기업이 개재된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으로서의 간접적인 공사도급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원고가 행한 위 계약보증은 보증을 할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가 도로공사 시행허가의 형식을 취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지만 그 실질은 ◇◇기업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같음하여 위 공사로 조성된 점포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다름이 없

어서 일종의 도급계약관계의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원고가 행한 위 계약보증은 결국 공사의 하수급인인 △△공업이 발주자인 인천직할시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계약관계상의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것이나, 피고가 지하도의 개설 및 점포의 조성이라는 행정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라는 공법상의 행위의 방식을 취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관청에 불과할 뿐 그 공사의 발주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 양자의 방식에 의하여 달성되는 효과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천직할시와 △△공업 사이에 원도급인과 하수급인으로서의 공사도급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론은, △△공업이 ◇◇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기업이 도로공사시행허가 조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 등의 의무와 그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의 예치 의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위 계약보증서들을 발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행한 위 계약보증이 건설공제조합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원래의 의미의 계약보증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업의 위와 같은 보증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2호 소정의 "기타보증"으로서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법이 제1조에서 건설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위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고,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공제조합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하자보수보증·손해배상보증·하도급이행보증·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으로 제한하면서, 제2조 제5호 내지 제12호에서 위 각 보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는 보증 이외의 보증은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업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도로공사의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기업이 그 허가조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와 그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의 예치 의무를 보증함에 따른 것으로서, 조합원의 이와 같은 보증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나 건설공제조합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행할 수 있는 "기타보증"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기타보증"을 하는 의미에서 위 계약보증서들을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기업이고 피고는 위 공사의 허가관청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위 계약보증을 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가 이제 와서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위 계약보증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원고가 행한 이 사건 계약보증이 무효인 이상 위 계약보증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교부

청구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인바, 가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이 위 각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인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4. 판례 해설

이 판례는 보증계약의 부종성 문제에 관한 전형적인 판례이다.

부종성은 말그대로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성질이다. 따라서 주채무가 그 전제로서 존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보증 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담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보증계약은 독립된 하나의 계약이면서 주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주채무에 종속한다. 이런 보증 계약은 내용적으로는 목적, 성질, 태양에 있어 주채무보다 중할 수 없다. 또한 성립에 있어 주채무와 그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판례는 이러한 내용을 잘 보여 주는 판례로서 그 내용을 보면 당사자 간의 계약 없이 공법상의 의무 이행 및 경제적 필요를 담보하기 위해 편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마치 정당한 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장하였다.

따라서 당사자간 채무이행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주채무가 없는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책임을 보증기관에 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주계약의 부존재로 인한 보증계약의 불성립 또는 무효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건 해당 법원이 판시와 같이 주채무의 부존재로 보증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결론이었으며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채권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자칫 놓치기 쉬운 법적 균형감을 잘 살린 판결이라고 본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갑을의 관계에서(경제적 종속관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지위로 인해 모든 것을 부당하게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 앞에 좀 더 당당해져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증거 자료 확보나 항변을 해 두어야 한다.

둘째, 주채무자가 의무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반대급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이를 적절히 이용한 항변권을 원용하여야 한다.(상계의 항변 등)

셋째, 주채무자 역시 채권자에 일정 부분 손해 배상이나 구상권을 가지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인인증서 발급 이벤트 당첨자 발표

우리조합은 조합원사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업체인 한국전자인증(주)과 함께 “공인인증서 40% 할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주)은 조합원의 공인인증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이용확대를 위해 고객감사경품이벤트를 실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다 음 -

가. 이벤트 기간 : 2010. 11. 5 ~ 12. 31

나. 이벤트 응모 :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 및 갱신 시 자동응모

다. 상품 내용 : 이벤트 기간에 자동 응모된 조합원사 중 120개사를 추첨하여 사은품(아래 이미지 참조)을 택배로 증정

라. 추첨 방법 : 협력업체에서 120개 업체 추첨

마. 당첨자(축하합니다) : 다음 표 명단

◎ 으뜸고객상 : 20개사

업체명	담당자	업체명	담당자
(주)산돌기술	심○정	남도엔지니어링(주)	남○희
(유)화진이엔지	조○	주식회사 한창	박○석
(주)재원	손○규	(주)신성씨엔씨	송○정
신광종합건설(주)	염○수	지엔건우 주식회사	전○진
삼성냉난방주식회사	박○이	한국하이테크(주)	김○용
광성건설(주)	남○향	(주)경동이엔지	김○경
미래에너지	박○아	(주)서령엔지니어링	류○자
부림건축설비	이○순	(주)재인정공	김○영
(주)노벨공조	박○월	(주)KD엔지니어링	이○주
(주)세기플랜트	정○희	영창엔지니어링	최○순

◎ 감사고객상 : 100개사

업체명	담당자	업체명	담당자
(주)쁘레	김○열	(주)주현건설	박○용
(주)지에스공영	오○택	신일인텍(주)	이○조
상원테크(주)	김○순	대광산업개발(주)	고○미
(주)다산엔지니어링	김○용	(주)삼영	장○희
미래정보산업(주)	김○수	(주)우진건설	김○수
주식회사지구냉열	고○진	(주)대영기계건설	안○숙
(주)신우산업	양○화	(주)티엠엔지	김○표
(주)포스텍	이○미	신임공영(주)	김○환
(주)우리에어텍코리아	윤○현	(주)서림기공	안○원
(유)전남에어컨총판	조○현	(주)제유이앤씨	이○호
(주)대림엔지니어링	정○섭	주식회사 창명테크	이○향
동양기체엔지니어링	이○희	(주)세기산업	서○녀
디지털국제공조(주)	문○경	(주)신세기건설	최○숙
한경엠이씨(주)	문○경	(주)대경테크	김○미
(주)경인이엔지	이○선	(주)디에스메카니칼	정○춘
(주)한주산업	유○수	우성공영(주)	고○정
(주)우신플랜트	정○은	(주)시스템서플라이	김○준
정일이엔지공영(주)	김○일	(주)아진이엔지	이○희
대원설비(주)	조○혁	(주)국제기업	김○숙
디컨이엔지(주)	김○영	(주)뉴템즈	김○흠
풍산건설(주)	강○열	주식회사 석강	홍○옥
(주)장안엔지니어링	이○아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송○영
(유)상일엔지니어링	장○익	경원산업	김○경
보쓰엔지니어링(주)	조○정	(주)금화PSC	송○영
경동기계설비(주)	김○애	대진설비(주)	이○영
(주)은창플랜트	김○효	(주)서환산업	김○미
(주)유진이엔지	권○선	상록산업(주)	유○동
중앙설비(주)	김○연	(주)정우엔지니어링	이○정
(주)부영기업	고○주	주식회사 대환이엔지	박○형
일오삼 건설(주)	김○운	(주)서진이엔지	하○선
(주)남광엔지니어링	김○영	삼광기건(주)	이○택
동일설비(주)	홍○표	대성이앤씨 주식회사	문○용

업체명	담당자	업체명	담당자
(주)진산종합건설	오○란	(주)삼원공무	한○용
(주)재성엔지니어링	성○현	(주)에덴설비	임○진
현동건설(주)	허○미	(주)아산엠이씨	권○준
(주)부광코리아	채○대	(주)케이아이씨아이엔엠	송○혜
(주)석전	전○수	청호기건(주)	배○희
(주)디텍엔세움	남○균	(주)신창기업사	하○이
(주)청운기공	선○주	(주)부림기공	박○경
(주)현대기업	전○원	(주)두온티앤씨	정○국
(주)삼성의료설비	김○진	희현에너지주식회사	안○성
(유)진웅기업	김○만	(주)태호건설	남○종
(주)기원설비	김○태	삼건설비(주)	염○옥
와이이에스이엔지(주)	이○희	주식회사장수플랜트	김○미
(주)신성이엔씨	강○명	현대가스탑주식회사	김○주
(주)금성냉동엔지니어링	배○운	(주)웅진엔지니어링	전○용
주식회사 지구	고○진	(유)하나산업개발	정○일
(주)동서냉열기	손○홍	(주)나성티앤에스	김○수
(주)경보엔지니어링	김○영	영평기계설비(주)	강○진
주식회사대한이엔지	김○희	(주)에어랩	최○순

◎ 으뜸고객상 사은품



◎ 감사고객상 사은품



※ 사은품은 택배를 통해서 배송될 예정이며, 설 명절로 인한 배송지연이 예상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